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35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10월 15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 2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 3. 상정일자 :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- 제6차 교육위원회(2021. 12. 17.) 상정·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육행정국장 이병호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(약칭: 조례)」의 제정 사유는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부존재하여 학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됨.
- ※ 최초 조례명: 「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」(2003년 제정)
- 최근 교육시설 조성,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(全)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.

※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(약칭 교육시설법)」 제정 및 시행[2019.12.3. 제정(시행일: 2020.12.4.)]

- 학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구체화 및 강화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,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5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 주요 내용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2020.12.4 시행)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현행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(이하 ‘시설물 안전 조례’)」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286호로 제정되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,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,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2019년 12월 3일, 교육부에서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

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교육시설법’)」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전반적인 교육시설¹⁾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,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,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「교육시설법」과 「시설물 안전 조례」의 조항을 비교·검토해보면([붙임] 참고), 「교육시설법」의 목적(제1조), 정의(제2조) 조항은 「시설물 안전 조례」의 목적(제1조), 정의(제2조), 적용범위(제3조)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학교급 및 설립유형 등에서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규정되었습니다.

또한 동 법률의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(제5조),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(제8조),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등(제10조), 안전점검의 실시·결과보고 등(제13조),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·공개 등(제23조)은 동 조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(제4조), 안전기준의 설정과 고시(제5조),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(제7조), 정밀안전진단의 실시(제8조)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.

- 한편 동 조례 제7조제3항²⁾은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「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」 제5조³⁾의 내용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

1)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라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(국방·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)
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

2)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
제7조(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학교장은 분기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·운영하여야 한다.
④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.

다.

또한 동 조례 제11조(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)의 경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(이하 ‘교육안전 기본조례’)」의 책무(제7조), 안전교육실시(제11조)와 유사한바, 동 조례 중 안전교육 내용은 「교육안전 기본조례」에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또한 동 조례 제6조(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)는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,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교육시설 안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,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중으로 동 조례의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한 유사 위원회 등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[표-1]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

(2021.7.1.기준)

	위원회명	설치근거	심의사항
1	교육시설 정책자문 위원회	-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	- 교육시설사업의 기본방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- 교육시설사업의 예산, 집행,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- 교육시설 표준화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- 교육시설물의 개축여부 판정 및 건물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- 재난위험시설지정, 해제, 관리 및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등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사항
2	재난위험 시설심의 위원회	- 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 관리지침 - 서울특별시교육청재난 위험시설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규정	- 재난 위험시설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- 재난 위험시설의 보수·보강, 철거등에 관한 사항 -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- 재난 위험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요구된 사항

3) 교육부, 「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」

제5조(안전점검의 실시자)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
2.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
3. 교육시설의 장과 계약된 위탁 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민간전문가

	위원회명	설치근거	심의사항
3	교육안전위원회	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(교육안전위원회)	-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-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- 교육 안전강화를위한 조사,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- 교육 안전 관련 예산현황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교육감이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
4	기술자문위원회	-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-서울특별시교육청기술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	- 학교의 신축과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한 증축,개축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- 학교시설의 기본계획, 설계, 시공,유지관리, 학교건축 디자인에대한자문 - 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기술·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-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○ 이와 같이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과 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타 조례에 이미 통합되어 시행중인바,

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